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회계관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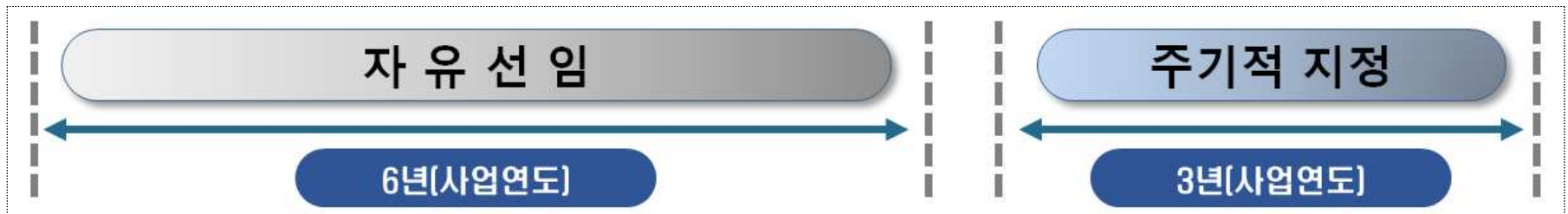
- 목차 -

- I.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 3 -**
-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16 -**
- III.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38 -**

I .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1 지정제도의 개요 ①

- (지정제도)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구분
 - (주기적 지정)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新외감법이 개정되어,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1 지정제도의 개요 ②

- (직권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
- 新외감법 개정으로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 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구 분	직권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 회사요청, ② 감사인 미선임, ③ 감사인 부당교체, ④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⑤ 감리결과 조치, ⑥ 부채비율 과다(폐지 예정) , ⑦ 관리종목 , ⑧ 상장예정법인, ⑨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지정요청, ⑩ 횡령·배임 발생 , ⑪ 주채권은행 등의 지정요청, ⑫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감법령을 위반한 경우(경미한 위반 제외)
폐 지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신 설	① 재무제표 대리작성·회계자문 요구, ② 3년 연속 영업손실 or 負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 (단,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는 제외), ④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⑤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⑥ 3년간 최대주주(2회↑) or 대표이사(3회↑) 변경 , ⑦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 위반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해당하는 지정사유

2 지정시기 ①

□ (주기적 지정)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20.9.1.)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지정대상회사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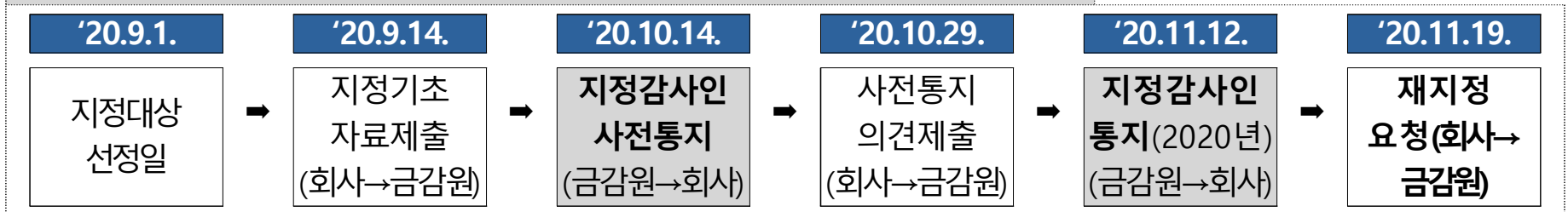
* 지정대상선정일 : 지정대상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외감규정 §12조⑧)

※ '19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19년이후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종료('21년)시까지 지정이 연기되나, '20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20년이후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1년부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10월 14일*(본통지 4주전)경에 회사와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1월 12일*경에 본 통지(지정통지)

* 사전통지 및 본지정 결과가 확정되는 날이며, 등기 발송 등으로 2~3일후에 지정통지 수령 가능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1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



2 지정시기 ②

□ **(직권지정)** 일부 예외적인 지정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차기연도(사업연도 개시 전)를 지정

* 상장예정법인(9월말까지 요청), 회사요청(감사인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상장폐지요건에 해당)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 직권지정 사유별로 지정대상선정일에 대상회사를 정한 후, 다음달 14일 경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사전통지일로부터 4주 후 본통지

주요 지정사유	지정대상선정일	실제 사례
가. 상장예정(9월말까지 요청)	지정요청일	7.5. 요청시: 사전통지 8.14. → 본통지 9.16.
나. 감사인미선임	6월 초일	6.1. 기준: 사전통지 7.12. → 본통지 8.14.
다. 감사인 부당교체, 관리종목(비적정*)	감독원장 인지일	7.10. 인지시: 사전통지 8.14. → 본통지 9.16.
라. 감리조치, 재무기준, 관리종목(비적정외) 등	9월 초일	9.1. 기준: 사전통지 10.14. → 본통지 11.12.

* (감사의견 비적정&상장폐지 요건) 거래소가 금감원에 지정대상 통보시 해당 사업연도부터 지정

3 지정기간

- (주기적 지정) 주권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됨
- (직권지정) 新외감법 시행으로 지정기간이 1 ~ 3개 사업연도로 늘어남(법 개정 전에는 감리조치를 제외하고는 1개 사업연도)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 3개 사업연도
-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 外) 1개 사업연도(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규위반 사유로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연도에 동일한 법규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받는 경우: 2개 사업연도)

[참고]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시

- ◆ '20~'22년까지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A가 '22년에 직권지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 상장사 A는 주기적 지정대상이므로, '22년에 직권지정 사유해당시 '24년까지 3년간 지정받아야 하므로 주기적 지정 기간('20~'22년)과 합하여 '20~'24년까지 5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됨

4 재지정요청

- (개요) 재지정요청은 통지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이 독립성 훼손사유 등 법령상 정해진 재지정사유에 해당시, 금감원에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주요 감사인 재지정사유

- .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비용분담을 요구하여 징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받은 경우**
-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최초 회사가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지정군보다 **상위 또는 하위 지정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모두 지정감사**이고,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 .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요청하는 경우
- . 그 밖에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요청방법)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감사인은 사전통지 후 2주 이내, 본통지 후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요청가능(전자방식)

* 한공회의 심의·징계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금감원에 기한연장 요청(공문)하고, 징계절차 마무리 후 요청가능

5 지정감사 계약체결 및 보고

□ **(계약체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통지*(본통지)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

* 감사인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본통지 이전에도 계약체결 가능

○ 다만 보수협약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에 체결하기 어렵거나 계약 전에 독립성이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 운영

*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 전기 감사인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19.11.12. 회계개혁 간담회)

□ **(체결보고)** 자유선임과 달리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금감원에 선임 내역을 보고(감사인 선임보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

* 지정감사의 경우에도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필요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매년 이행상황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함(단,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은 차기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일괄제출 가능)

○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시와 동일하게 금감원에 체결내역을 보고

6 지정방식 ①

□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대로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별도)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5조원} \uparrow \text{ 3배, 4천억~5조원 2배 가중치 부여)}}$

○ 대형·중소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정점수 차감시 가중치 부여('19.10월부터)

<지정방식 예시>

지정감사인			지정대상회사			
회계법인명	감사인 지정점수	지정군	회사명	자산규모	지정군	가중치
I 법인	100,000 점	가	A사	10조원	가	3배
II 법인	95,000 점	가	B사	2조원	나	2배
III 법인	90,000 점	가	C사	3천억원	라	1배
IV 법인	80,000 점	나	D사	2천억원	라	1배
V 법인	75,000 점	나	E사	8백억원	마	1배
VI 법인	70,000 점	나	F사	5백억원	마	1배

6 지정방식 ②

- (지정군) 회사의 전기말 자산(별도)규모에 따라 5조원 이상은 '가'군(群), 1조원 ~ 5조원은 '나'군, 4천억 ~ 1조원은 '다'군 등 5개(가~마)의 군으로 구분
 - 감사인은 공인회계사수, 감사업무 매출액 등 분류기준에 따라 5개 군(群)으로 구분하여, 회사가 속한 군(群)보다 감사인의 군(群)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정
- (감사인 등록제)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법 9조의2①에 따라 등록된 감사인에게만 배정('20 사업연도부터)
- (기타) 회사가 전기에 자유선임했던 감사인은 당기 감사인 지정시 배제*
 -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선임시(자유선임) 전기 지정감사인을 배제해야 함(외감법 §11조⑥)
 -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 회사는 지정사유가 동일한 경우, 전기에 지정받은 감사인을 당기에도 우선적으로 배정(3개 사업연도 恨)

7 주기적 지정제 세부내용 ①

□ **(감리결과 무혐의)**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

*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받지 않은 경우

○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감리를 신청할 수 있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으면 지정면제

□ **(감리진행)**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지정이 연기

○ 감리결과 무혐의인 경우 향후 6년간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결과 지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직권지정을 받게 됨

□ **(잔여계약)** 주기적 지정 시행('19.11월) 전에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에는 지정연기*

*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가 있으므로 '19년 신규 자유선임한 경우 '21년까지 주기적 지정이 연기

7 주기적 지정제 세부내용 ②

□ (분산지정) 특정연도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가 **쏟리게*** 될 경우, 지정하는 회사수가 일정(220사)하게 되도록 **분산하여 다음연도로** 지정을 연기

* 회계법인의 감사인력 확보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 지정해제 후 자유선임시 수주경쟁으로 인한 감사 품질 저하우려

○ 다음연도에는 지정이 연기된 회사부터 우선 지정하며, 나머지는 해당연도 지정대상회사 중 자산규모가 큰 순서대로 지정

※ 금년도 지정시(2021 사업연도)에는 전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이었으나 외감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산順에서 금년으로 연기된 회사를 먼저 지정하고, 동 사들이 220사에 미달할 경우 금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중 자산규모가 큰 회사順으로 감사인 지정

□ (기타) '20년 이전에 직권지정을 받았던 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 사업연도(자유선임)가 지나면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

* 예를 들어 '18년 사업연도에 직권지정을 받은 경우 '25년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지정 대상

감사합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 주기적 지정

☑ Q1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판단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데, **6개 사업연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21년 주기적 지정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일반적인 경우 '15년부터 '20년까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입니다.

다만,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21년 주기적 지정은 분산지정에 따라 전년도 이월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를 먼저 지정하고, 분산지정 회사수(220사)에 미달할 경우 금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중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일부 회사만 지정하고 그 외의 회사는 차기년도로 지정이 연기됩니다.

한편,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회사는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하며, 연속 감사계약 중이라도 주기적 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 감리결과 경미조치시 주기적 지정 면제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 주기적 지정 **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증선위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기적 지정이 면제*되며,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 감리무혐의 종결일부터 6년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에서 제외

한편, 재무제표 심사(외감규정 §23①1호나목)는 감리(외감법 §26조)와 다르며, 재무제표 심사결과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3 감리중인 경우 주기적 지정 연기여부

회사가 현재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정대상선정일 현재 외감법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진행중인 회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연기됩니다.

다만, 재무제표 심사(외감규정 §23①1호나목)는 감리(외감법 §26조)와 다르며, 재무제표 심사중인 경우는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4 주기적 지정제 시행 전에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에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경우, 언제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19년부터 '21년까지 3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감사인으로 자유선임한 회사*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 지정이 연기되며, 다른 면제나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2년부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Q5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주기적 지정대상 판단

금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모든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해당하는지?

'20년에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며,

* 6개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감사대상이면 충족 여기서, '20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19년말 기준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고 지정대상선정일('20.9.1.)까지 요건이 해소되지 아니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①과거 6년 이내 감리 무혐의 조치, ②잔여 감사계약*, ③감리중인 회사)에 해당하면 금년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2019 사업연도 감사계약시 대형비상장주식회사('18년말 기준 자산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1 사업연도까지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6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인 지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받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기간은 몇년인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한편, 금년에 지정을 받은 회사가 지정이후 소유·경영미분리 요건 등 지정사유를 해소하여도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은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Q7 소유·경영미분리 판단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개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지분율이 50%이상 & ②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 ③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19년말이후 지정대상선정일('20.9.1.)까지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9.1.~9.14.)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할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8 소유·경영미분리 주요 사례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분 100% 소유하고 지배주주 자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하는지?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유·경영미분리 판단과 관련한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경우(대표이사는 주식 미소유)
⇒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② 회사의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중 1인만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다수의 대표이사 중 1인이상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

☑ Q9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제출 서류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미분리 판단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모든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외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 종료후 14일내에 '19년말 기준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eacrs.fss.or.kr)해야 합니다.

또한,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자료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한 경우 9.1.~9.14. 기간중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동 자료를 통해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직권 지정

☑ Q10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 2회 이상 변경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회사는 지정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① 사망, 상속,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②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기관 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변경된 경우, ③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외감법 시행령 §15조④)들 간에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변경된 경우, ④ 동일 주식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 Q11 최근 3년 이내 대표이사 3회 이상 교체

최근 3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3회 이상 교체된 상장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3회 이상 교체된 상장회사는 지정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① 사망,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 ②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고, 이 중 일부만 교체된 경우[기존 대표이사 전원 교체시(순차교체 포함)에 1회 교체로 간주], ③ 기존 대표이사는 교체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는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12 당기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이나 대표이사 교체 사유로 지정된 회사

당기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 사유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당기에 지정대상 선정시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 관련 지정대상 선정시 당기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지정(지정대상선정일) 이후 변경 또는 교체 횟수로 지정대상을 선정(판단)합니다.

☑ Q13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예, 3년 연속 영업손실) 판단

재무기준 지정사유 중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근 상장한 회사의 경우 상장일 이전의 재무제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근 상장한 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시, 상장일 이전의 재무제표도 포함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14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 적용 관련

新외감법 개정으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이나 **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또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나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상장회사는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외감법 시행령 §8조③2)는 부의 영업현금흐름 관련 지정대상 선정시에는 예외로 인정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가지(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신규 재무기준 지정대상 모두에 대해 예외로 인정됩니다.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외감법 시행령 §14조①)와 기술성장기업*

* 지정대상선정일 현재 거래소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성장기업

② 상장회사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등급*) 이상인 회사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현재기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기준, 이와 동등한 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포함)

※ ②의 경우 전년도에는 부의 영업현금흐름 기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세가지 신규 재무기준 모두에 대해 예외로 인정(다만, 전년도 지정받은 회사의 경우 기존 지정조치가 유지되며, 잔여지정기간동안 지정 예정)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15 당기 이전에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

당기 이전에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당기에 어떻게 지정대상을 선정하는지?

당기 이전에 세가지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부의영업현금흐름 발생, 이자보상 배율 1미만)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지정(지정대상선정일) 이후 제출된 재무제표로 지정대상을 선정(판단)합니다.

☑ Q16 부채비율 과다 지정사유 폐지 관련

'20.6.22.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사유(부채비율 과다)를 폐지하기로 발표하였는데, 동 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동 지정사유는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현재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이며,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전년도 '부채비율 과다' 지정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경우 기존 지정조치가 유지되며, 잔여지정기간동안 지정될 예정입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17 직권지정(회사요청) 신청 가능여부

상장회사가 자유선임한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상장회사는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3개 사업연도 중이라 하더라도 감사인 선임기한내에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기한이란 회사에 따른 법정 선임기한을 의미할 뿐, 실제 계약체결연도(1년차)의 선임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3년 계약기간 중 2년차, 3년차에 도래하는 선임기한*내에서도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계속 감사: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4 재지정 요청

☑ Q18 상·하위 지정군 재지정 관련

회사는 감사인 지정후 감사인이 속한 군(외감규정 별표4 제2호의 표)보다 상·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회사는 지정사유에 불문하고 감사인 지정을 받은후 회사의 의사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상·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하위 지정군을 사유로 한 재지정은 사전통지·본통지를 불문하고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재지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예) 사전통지에서 하위군 재지정 요청을 한 경우 본통지시에는 상·하위군 구분없이 재지정 요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감사인 지정 2년차·3년차에 전년과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은 회사는 상·하위군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19 상위 지정군 재지정 요청 방법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외감규정 별표4 제2호의 표)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청방법은 외감규정 별표4(제3호.사목)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상 '라'군에 해당하는 회사가 사전통지시 '라'군에 속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① '가'군, ② '가'군 또는 '나'군('나'군 이상), ③ '가'군 또는 '나'군 또는 '다'군('다'군 이상)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 기한 내에 재지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 Q20 하위 지정군 재지정 요청 방법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외감규정 별표4 제2호의 표)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청방법은 외감규정 별표4(제3호.아목)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상 '라'군에 해당하는 회사가 사전통지시 '가'군에 속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① '나'군 ② '나'군 또는 '다'군('다'군 이상), ③ '나'군 또는 '다'군 또는 '라'군('라'군 이상)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 기한 내에 재지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1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모두 지정감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지정을 받은 경우 외감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 일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치하고자 하는 감사인이 회사·감사인 자산군, 전기 감사인 배제 등 감사인 지정방법에 어긋날 경우 재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22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한쪽만 지정감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지배·종속회사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인 일치를 위한 재지정 요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 ① 자유선임 중인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감사인 선임기한내에만 가능)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은 후 지배·종속회사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자유선임으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과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기존 감사인을 해임(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하고 다른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을 선임(자유선임)할 수 있습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3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계약 중도해지(모두 자유선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자유선임 감사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라도 감사인을 중도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 등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사인의 중도교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은 지정되며, 해당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잔여 계약을 해지하고 지정감사인을 선임(자유선임)할 수 있습니다.

5 | 지정방법 등

☑ Q24 지정감사인을 정하는 방법

감사인 지정시 지정대상 회계법인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혹시 여러 곳을 지정하는지?

감사인 지정방식은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개별 재무제표)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합니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는 회계법인 한 곳*을 정하여 지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 舊 외감법상 상장예정회사이거나 회사가 지정요청(감사(위원회) 승인)한 경우 감사인 두곳을 지정하였으나 동 제도는 폐지

☑ Q25 지정감사인 자격제한

회사가 2021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 2020 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인도 지정될 수 있는지?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유선임한 감사인(회계법인)은 당해연도에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경우, 전기 지정감사인을 당기 자유선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6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 지정사유 추가 발생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는 회사가 직권 지정사유에도 해당하게 되면, 지정기간이 연장되는지?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회사가 직권 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해 지정이 연장됩니다. 또한, 직권 지정을 받고 있던 회사에 새로운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하여도 동일하게 지정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년~'22년까지 주기적 지정을 받는 회사가 '22년에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직권 지정대상이 된다면, 해당회사는 '20년부터 '24년까지 총 5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 Q27 지정사유 소멸시 지정해제 여부

재무비율 악화, 횡령·배임혐의 공소제기 등의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의 상황이 크게 변동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

감사인 지정은 행정처분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며 잔여지정기간동안 지정됩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8 연속 지정시 감사인 지정방법

2020 사업연도를 기 지정받고 금년에 2021 사업연도를 다시 지정받는 경우 2년차 감사인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주기적·직권)지정사유 발생시 3개 사업연도를 지정하며, 이 경우 2년·3년차 감사인은 1년차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자산군, 지정제외점수 무관)으로 우선 지정됩니다.

다만, 금년에 새로운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감사인이 우선 배정되지 않고 법령상 감사인 지정방식에 따라 감사인(회계법인)의 지정점수 순서대로 회사가 지정됩니다.

※ 신규 지정사유 발생유무에 따른 예시

(사례1) 코스닥 상장 A사는 2020 사업연도에 주기적 지정으로 甲회계법인을 지정받았으며, 2021 사업연도에는 추가적인 지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甲회계법인을 동일하게 우선하여 지정

(사례2) 코스닥 상장 B사는 2020 사업연도에 주기적 지정으로 乙회계법인을 지정받았으며, 2021 사업연도에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여 지정순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29 독립성 이슈 해소 관련 지정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여부

지정통지를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 간에 **독립성 이슈**가 있어 감사계약 **체결전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 체결기한(지정통지 후 2주 이내)**을 준수해야 하는지?

지정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 간에 재무적 이해관계 등 독립성 이슈가 있어 계약체결 전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금감원에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 Q30 지정감사인과의 보수협의를 어려운 경우

감사인 지정을 통지받은 감사인과 **보수협의를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단순히 보수협의를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는 없으며**,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보수요구와 관련하여 **한공회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 회사는 **재지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경우로서 한공회 내 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재지정요청이 가능
한편, 일반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간 보수협의를 난항을 겪어 기한내에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금감원에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II.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Q31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방법

회계법인이 전년도와 동일한 회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는 경우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금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는 ①전년도 지정받은 회사중 지정기간이 1년 초과하거나 ②금년 신규 주기적 지정 회사, ③금년 신규 직권지정 회사가 포함되며 감사인 지정시에는 지정대상회사 전체를 자산규모順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합니다.

①과 같이 회계법인이 전년도와 동일한 회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점수는 차감됩니다.

☑ Q32 금융회사의 감사인 지정방법

금융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금융회사 감사실적 등 외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를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합니다.

*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감사실적, 금융회사 감사시 투입가능한 인원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

** (외감규정 시행세칙 §15②) 감사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산정기준일(8월 31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기초자료를 금감원에 제출

감사합니다.

Ⅲ.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1 개요

□ **(대상)** 주권상장법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회계법인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이상 &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 &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비상장주식회사

□ **(시기)** 사업연도 시작후 9개월째 초일부터 2주 이내(12월결산: 9월1일 ~ 9월14일)

□ **(방법)**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제출*

* 제출완료후 수정 필요시 처음부터 재작성하여야 하며, 다수건을 제출한 경우 기한내 최종 제출된 자료를 지정기초자료로 간주할 예정

□ **(매뉴얼)** '20.8.31.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상세한 작성 매뉴얼을 게시할 예정

※ 아래 내용들은 12월결산기업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외 결산기업은 결산월에 따라 일정이 조정됨

2 주권상장법인

- (법인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농협은행
- (사업연도) 당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
- (합병 분할 내역) '19.9월 이후 합병·분할기일, 회사명(금감원 고유번호)을 포함한 합병·분할 세부 내역
- (주소 및 전화번호) 실제 자료작성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업종 및 업종코드) '20.9.1.기준 거래소 업종코드(6자리)와 업종명
- (연결 여부) 직전 3개 사업연도(예/아니오)

Ⅲ.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3년간 연결지표)** 자산, 부채, 자기자본,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이자비용
 - 각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 수치 기준으로 작성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연도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오류수정이 당기 비교재무제표에만 반영된 경우 비교표시상 수치 기준

※ 모든 금액은 '원' 단위로 기재

- **(이자비용)** 금융비용(원가) 중 이자비용(주석항목), 영업외비용상 이자비용
 -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 이자로 구분된 경우 합산
- **(영업비용상 이자비용)** (포괄)손익계산서 영업비용의 이자비용(예, 금융회사)
- **(별도지표)** 자산총액('20.9.1.기준 직전사업연도 : 2019 사업연도말)

III.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과거 3년간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17.9.2.~'20.9.1. 기간 중 변경공시일, 변경전·후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사유

※ 예외사항 매뉴얼 참조

(관리종목) '20.9.1.기준 관리종목 지정여부(예/아니오)

○ 세부 지정사유 기재(재무기준, 시가총액 등)

(투자주의 환기종목) '20.9.1.기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여부(예/아니오)

○ 세부 지정사유 기재(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횡령·배임) 공시일, 임직원, 혐의 금액, 자기자본

○ 공시기준으로 '19.9월 이후 횡령·배임 혐의가 최초 발생한 경우 기재

Ⅲ.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신용등급)** 등급부여일, 평가기관, 평가대상, 등급
 - 재무기준(3년 연속영업손실·부의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근 1년 이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으로부터 투자등급이상의 신용등급(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기재
-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 자유선임, 지정, 해당없음
- (연속감사 당기 차수)** 2020 사업연도의 연속감사 차수(1년/2년/3년)
- (과거 6년내 감리 여부)** 감리중, 무혐의, 조치, 해당없음
 - '14.9월 이후 감리 무혐의 종결(조치)일, 감리기관
- (외부감사법 위반)**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관련 조치(감사전재무제표 등)
- (소송 등)** 외감법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정지 등 제기·진행·종료내역

3 | **소유 · 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합병 분할 내역) '19.9월 이후 합병·분할기일, 회사명(금감원 고유번호)을 포함한 합병·분할 세부 내역
- (주소 및 전화번호) 실제 자료작성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농협은행
- (별도지표) 자산총액('20.9.1.기준 직전사업연도 : 2019 사업연도말)
-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 자유선임, 지정, 해당없음
- (연속감사 당기 차수) 2020 사업연도의 연속감사 차수(1년/2년/3년)
- (과거 6년내 감리 여부) 감리중, 무혐의, 조치, 해당없음
 - '14.9월 이후 감리 무혐의 종결(조치)일, 감리기관

III.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외부감사법 위반)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관련 조치(감사전재무제표 등)
- (소송 등) 외감법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정지 등 제기·진행·종료내역
- (지배주주 지분율) 2019년 말 기준 지배주주*¹(특수관계자*² 포함) 지분율*³, 발행주식 총 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소유주식 수, 지배주주명, 특수관계인수 (당해 회사 주식 소유자)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를 의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

*3 지분율 계산 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 대표이사와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2020.9.1.현재 소유·경영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 '기타 추가 제출 내역'에 해소사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현황자료(20.9.1.현재)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1.1.~'20.9.1.)를 첨부

4 회계법인

- (사업연도) 현재 사업연도('20.8.31. 속하는 사업연도 기재)
- (주소 및 전화번호) 실제 자료작성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주권상장법인 등록 여부) 예/아니오
 - '20.8.31.기준 등록된 경우 “예”로 기재
- (공인회계사 수) '20.8.31.기준 경력회계사(15년이상, 10년, 6년, 2년, 2년미만), 수습회계사 수(명단 파일 첨부)
 - ※ 회계법인이 한공회에서 신고하는 경력 및 수습회계사 현황 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 (매출액) '20.8.31.기준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 회계감사업무 매출액(임의감사 포함)

Ⅲ.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20.8.31.기준 등록요건상 담당자 수(별표1 제1호마목),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담당이사 제외),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여부

※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손해배상능력)** 직전 사업연도말 손해배상공동기금, 손해배상준비금, 연간 보험료(합산, 환산)

□ **(감사대상 상장사 수)** '20.8.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내에 결산일 도래하는 상장회사 수(임의감사 제외)

○ 2019 사업연도 감사 회사는 포함하고, 2020 사업연도 감사 회사는 제외

□ **(지정제외 점수)**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20.8.31.기준 1년, 1~2년, 2~3년 이내로 구분)

□ **(소송 등)** 외감법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정지 등 제기·진행·종료내역

III.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감사업무 제한 회사) 예/아니오

※ 명단 파일 첨부 필요

(금융회사* 감사 자료) 예/아니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당회사 및 농협은행

※ 명단 파일 첨부 필요

감사합니다.